

##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연구\*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우(李翔宇)\*\*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와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에 주목하여, 양 대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또한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에는 당대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당대표자회가 존재하고 개최되어 왔는가? 둘째, 북한과 중국의 당대표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셋째, 북한과 중국의 당대표자회의 권한과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이다.

북한과 중국의 당대표자회는 소련공산당의 당대표회의제도를 수용 및 발전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2010년 당규약 수정 권한을 부여받았고, 2010년과 2012년 각각 김정일과 김정은을 최고지도자로 추대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킨 반면,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존재감을 거의 상실했다. 이러한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과 관련해, 이 논문은 당규약에 따라 당대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정기적 개최 여부, 당의 지도이념과 지도체제의 구축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주제어: 당조직제도, 당대표자회, 당대표회의, 비교, 함의

\* 본 연구는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AKS-2014-OLU-2250004).

\*\*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조선로동당<sup>1)</sup>과 중국공산당의 대표자회<sup>2)</sup>의 권한과 역할에 주목하며, 양 대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최근 들어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이하 당대표자회)는 다시 주목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3차·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파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의의 경우, 김정일을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가 아닌 당의 전국적·공식적인 대회를 통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는 점,<sup>3)</sup> 당대회가 독점했던 권한

- 
- 1) 이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을 칭함에 있어서 주로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다만 ‘조선로동당’은 북측에서 부르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문맥에 따라 각주 설명에서는 ‘조선’이라는 명칭도 혼용했다.
  - 2) 조선로동당의 당대표자회 격에 해당되는 회의를 중국공산당은 전국대표회의(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 이하 당대표회의)라고 부른다. 당대표회의는 전국대표대회(中國共產黨全國代表大會, 이하 당대표대회)와 한 글자의 차이가 나지만 권한과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 3)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을 1997년 10월 8일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실제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높이 모시었고”, 2010년 9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고딕체는 필자 강조, 이하 동일함)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었다.” 이와 관련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략력,” <http://www.kcna.kp/kcna.user.exploit.exploitkcmsf;jsessionid=74DFA640D8F7D096DE2B7649BE418020>(검색일: 2019년 2월 10일). 김정일 약력에서는 김정일이 역임한 직책을 소개하면서 직책을 맡게 된 해당 회의를 자세히 밝히고 있지만, 유독 1997년 10월 8일의 ‘추대는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관련한 연구자의 분석은 다음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인 당규약 수정·보충 권한과 당최고지도기관 선거 권한을 당대표자회에 중복 부여했다는 점,<sup>4)</sup> 그리고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의 경우, 김정은을 신설된 당 제1비서와 더불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3대 권력세습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드는 질문은 중국공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당대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당대표자회가 존재하고 개최되어 왔는가? 또한 당대표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이다. 연구자들은 북한에 있어서 당대표자회 내지 당대회의 중요성에 공감해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sup>5)</sup> 정작 당대표자회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을뿐더러, 선행연구들은 대개 시기별·주제별 분절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6)</sup> 이에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당대회(총 6회)와 당대표자회(총 4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변화를 통해 조직과 인사, 정책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가체제적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 진용선(2013)도 상술한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 김정일 사후 북한 정치권력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당의 정상화 및 당의 정상적 기

4) 이기동,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국방연구』, 제54권 1호(2011), 87쪽.

5)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당대회를 자세하게 분석한 선행연구로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279~284쪽 (여기서 표기한 페이지는 당대표자회를 분석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하 동일하다)과 297~315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767~782쪽;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경기: 한울, 2010), 539~547쪽, 590~594쪽, 713~721쪽 참조.

6) 진용선, “북한 조선 노동당 대회 및 대표자회 연구: 당 규약, 조직, 인사,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0~18쪽. 제3~4차 당대표자회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도, 제3차 당대표자회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러 편 있으나,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다.

능의 회복이라고 할 때,<sup>7)</sup> 당대표자회 내지 당대표대회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및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 집권당의 당내 제도 중에서 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조직제도이다.<sup>8)</sup> 조선로동당의 당대표자회와 중국공산당의 당대표회의는 북중 양당·양국이 소련공산당의 대표대회제도를 수용 및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화·발전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로동당의 당대표자회는 당대회가 독점했던 권한인 당규약 수정·보충 권한과 당최고지도기관 선거권을 당대표자회에 중복 부여받음으로써 존재감이 부각되는 반면, 중국공산당

---

7) 김창희는 김정은 시대 5년간 북한 정치과정의 특성을 정치권력 중심을 당에 둔 점이라고 보고,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진행된 정치체도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희,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체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84호(2017), 139~160쪽. 김정일 사후 2019년 현재까지 북한에서 개최한 중요한 중앙당 회의를 보면, 2011년 12월 30일 개최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정치국 회의를 기점으로, 당대회(1회), 당대표자회(1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5회), 정치국 회의와 확대회의(총 8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총 8회), 당세포비서(위원장) 대회(2회) 등이 있다. 즉 김정일 사후 중앙당급 회의가 총 24회 개최된 것으로 2011~2019년간 약 3회/년 개최된 것이며, 김정일 시대의 정치과정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8) 유은하, “개혁기 중국 공산당 변화 연구: 당의 조직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3집 2호(2012), 4~5쪽. 당내 제도는 규범(規章)제도, 민주제도, 기율(紀律)제도, 당무(黨務) 관리·사무(工作)제도 등으로 구분하거나, 좀 더 명확하게 지도(領導)제도, 조직제도, 사무제도(당내 정치)생활(政治生活)제도, 감독(監督)제도 등으로 구분한다. 이와 관련해 蔡霞, “以制度建設承載與保障黨的先進性-中國共產黨90年制度建設的回顧與思考,” 中共中央組織部全國黨的建設研究會編, 『紀念中國共產黨成立90周年黨建研討會論文選編』, 上冊(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11), pp. 280~281쪽; 李玉榮, “新中國60年黨的制度建設的回顧與思考,” 『政治學研究』, 第4期(2009), 8~11쪽을 참조. 이 중 당 운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제도에는 대표대회제도, 간부제도, 당원관리제도 등이 포함된다.

의 당대표회의는 1985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9)</sup> 그렇다면 1985년 이후 당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당규약에 당대표회의 관련 조항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권한과 역할 면에서 볼 때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왜 중국의 당대표회의보다 더 중요한 기구가 되었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네 차례의 당대표자회 간 또는 두 차례의 당대표회의 간의 비교가 당대표자회 또는 당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해에 유의미하지만, 양 대회를 연구 대상으로 한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은 이른바 ‘북한 특수주의’를 지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요컨대, 이 논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에는 당대회·당대표대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당대표자회·당대표회의가 존재하고 개최되어 왔는가, 둘째, 당대표자회·당대표회의는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셋째, 당대표자회와 당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당규약을 중심으로 당대표자회와 당대표회의의 개념,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에 대한 진일보의 분석을

---

9) 중국학계에서조차 당대표회의를 당대표대회로 착각하거나, 아예 당대표회의의 개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대표회의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학술지 논문 몇 편과 학위논문 1편에 불과하고, 학술지 논문은 당대표회의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아닌 회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10) 북한 정치체제의 연구에 있어서의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12)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위해 네 차례의 당대표자회와 두 차례의 당대표회의를 개최한 역사적 배경 또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기초로 양 회의의 차이를 결정하는 원인을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상술한 분석이 갖는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당대표자회와 당대표회의: 개념, 권한과 역할

당대표자회·당대표회의의 기원은 소련공산당의 대표대회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련공산당 당대표자회는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1905년 처음으로 개최되었고,<sup>11)</sup> 당대표자회에 대한 규정은 1907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통과된 당규약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sup>12)</sup>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은 소련의 당규약을 ‘모방’해 당규약을 제정했고, 소련공산당 조직제도 중 주요한 제도인 대표대회제도 역시 양당에서 수용 및 변용되었다.

### 1) 당대표자회의 개념, 권한과 역할

당대표자회의 개최는 조선로동당 당규약에 근거를 두기에, 당대표

---

11) 러시아사회민주당의 볼셰비키파(소련공산당 전신)는 1905년 12월 10일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다수의 지방조직에서 대표를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 파견된 대표들이 길에서 체포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대신 당대표회의를 개최했다. 波諾馬廖夫, 『蘇聯共產黨曆史』, 上冊(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4), p.109.

12) 李思學, “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研究”(中國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p.5.

자회의 개념, 권한과 역할에 대한 고찰은 조선로동당 당규약 규정 및 규정의 변화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로동당 당규약은 1946년 제1차 당대회에서 제정된 이후 2016년 제7차 당대회까지 포함해 총 8차 개정되었다.<sup>13)</sup> 당대표자회에 대한 규정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당규약(2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 당규약의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강조점에서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최신 조선로동당 당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회의로 정의할 수 있다.<sup>14)</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표현이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당규약에서는 ‘긴급한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대표자회의 의사결정 수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반대로 이는 ‘기본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당대회에 비해 의사결정 수위가 낮음을 보여 준다.<sup>16)</sup>

이러한 의사결정 수위와 더불어 당대표자회는 다른 중요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당의 입법, 선거 관련 권한과

---

13) 구체적인 개정 시기, 대회 및 당규약 구성은 1948년 1차 개정(제2차 당대회, 4장 41조), 1956년 2차 개정(제3차 당대회, 10장 62조), 1961년 3차 개정(제4차 당대회, 9장 70조), 1970년 4차 개정(제5차 당대회, 10장 60조), 1980년 5차 개정(제6차 당대회, 10장 60조), 2010년 6차 개정(제3차 당대표자회, 10장 60조), 2012년 7차 개정(제4차 당대표자회, 10장 60조), 그리고 2016년 8차 개정(제7차 당대회, 10장 60조)이다.

14) 『조선로동당 규약』(2016년 5월 28일) 제32조 참조.

15)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IV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c), 143~144쪽.

16) 『조선로동당 규약』(2016년 5월 28일) 제23조 참조.

<표 1> 당대표자회의 권한의 강화

	당대회	당대표자회(신당규약) (2010년 이후)	당대표자회(구당규약) (2010년 이전)
의사결정	① 당중앙위원회·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함. ②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들을 토의·결정함.	①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함.	①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함.
입법	① 당의 강령·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함.	①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음.	규정 없음.
선거	① 당 위원장을 추대함. <sup>1)</sup> ② 당중앙위원회·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함.	① 당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보선함. ② 당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할 수 있음.	① 당중앙위원·후보위원·준후보위원을 제명, 그 결원을 보선함.

주: 1) 당 위원장은 ‘당의 수반’으로 제7차 당대회 이전은 당 총비서, 제3차 당대표자회 이전은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다.

자료: 『조선로동당 규약』(2016년 5월 28일) 제23조; 진용선, “북한 조선 노동당 대회 및 대표자회 연구-당규약, 조직, 인사,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176쪽; 박상철,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헌법과 당규약,” 『안보학술논집』, 제27집(2016), 394쪽 등을 참조 작성.

역할이다. 당대표자회의 권한과 역할은 신(新)·구(舊) 당규약에서의 규정의 변화, 그리고 당대회에 대한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표 1>에서 보듯이, 권한에 있어서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동등한 지위로 격상된 것은 아니지만,<sup>17)</sup>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크게 강화되었다. 즉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물론, 입법 및 선거 관련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당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당대회가 독점했던 최고

17) 당대회의 상술한 권한과 역할 외에도, 조선로동당 당규약은 기타 두 조항에서 당대회를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당대회가 조선로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2016년 5월 28일) 제14조와 제22조 참조.



<표 2> 당대표자회의 개최 시기와 주요의제

	주요의제
제1차 (1958.3.3~6)	①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7~1961) ②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③ 당 조직 문제
제2차 (1966.10.5~12)	①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②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70) 3년 연장) ③ 월남문제에 관한 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④ 당 조직 문제(당 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 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2010.9.28)	①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② 김정일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③ 당규약을 개정 ④ 당 중앙지도기관, 당 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2012.4.11)	①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② 당규약 개정(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③ 제1비서직을 신설, 김정일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 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44쪽을 참조 작성.

입법권과 최고 선거권까지 중복 부여받았다.<sup>18)</sup>

한편, 강화된 당대표자회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회에서 다룬 주요의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는 당대표자회의 당대표자회의 강화된 권한과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의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강화된 최고 입법권을 행사했고,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김정일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당중앙지도기관·중앙위원회 선거(이상 제3차 당대표자회), 김일

18) 물론 입법 권한에 있어서 당대표자회는 규약보다는 높은 층위에 있는 강령(黨綱)에 대한 수정·보충 권한까지는 부여받지 못했다.

성·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총비서로 추대, 제1비서직을 신설, 김정은을 당 제1비서, 정치국 위원·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이상 제4차 당대표자회)함으로써 강화된 최고 선거권을 행사했다. 이 중에서 특히 김정일을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1997년)가 아닌 당의 전국적·공식적인 대회(2010년)를 통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북한에서는 3년간의 유훈통치가 끝난 이후인 1997년 9월 21일 평남도당회가 열려 김정일의 당 총비서 추대를 결정하고, 22일 인민군당대표회가 열려 군대의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가 결정되었다. 또한 이 회의들을 계기로 각 도당의 대표회가 9월 30일까지 열리고,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공동결정으로 당 총비서 추대가 선언되었다.<sup>19)</sup> 2010년 제3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점, 동 대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점, 그리고 2012년 제4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이 당 제1비서·정치국 상무위원·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시작은 김정은 시대보다 더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2010년 이후 북한의 정치과정에서 당대표자회가 갖는 의미를 잘 보여 준다.

---

19)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결정,” 『로동신문』, 1997년 9월 22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 『로동신문』, 1997년 9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로동신문』, 1997년 10월 9일. 이상 김용현,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2005), 128쪽에서 재인용.

## 2) 당대표회의의 개념, 권한과 역할

중국공산당 당규약은 1921년 7월 개최된 제1차 당대표대회가 아닌 1922년 제2차 당대표대회에서 6장 29조로 최초 제정되었다.<sup>20)</sup> 그 이후 당규약은 제3차 당대표대회에서의 1차 개정을 시작으로 제19차 당대표대회까지 총 1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당대표회의의 관련 규정은 1945년 제7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후 관련 규정은 제8차~제12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사라졌다가,<sup>21)</sup> 1987년 제13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이후 계속 나타나고 있다.<sup>22)</sup>

최신 중국공산당 당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대표회의는 당중

---

20) 제1차 당대표대회에서는 당규약(黨章)이 아닌 당의 강령만 채택했다.

21) 제8차 당대표대회의 경우, 당대표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상임제(常任制)'를 실시할 것으로 결의했기에, 만약 결의한 대로 실천된다면 당대표회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제는 당대표대회의 연례화(年會制)로 당대표대회를 5년이 아닌 매년 개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제도와 유사하다. 구자선, “장쩌민-후진타오 시기 중국공산당 개혁 연구: 당내민주와 자정운동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5~126쪽 참조. 실제로 제8차 당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당대표대회에서 유일 무이하게 1차 대회(1956년 9월 15~27일)와 2차 대회(1958년 5월 5~23일)를 개최한 당대표대회이다. 따라서 만약 이런 식으로 당대표대회의 x차 대회를 진행한다면 굳이 당대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제9차~제11차 당대표대회는 중국정치가 혼란 상태에 처한 특수한 시기에 개최된 대회로, 해당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6장 12조(제9차~제10차), 6장 19조(제11차)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2) 1982년 제12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부터는 제7~8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되었던 당규약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당의 조직제도를 규정하는 제2장의 제12조에는 “현급 및 현급 이상의 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회의를 소집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문제를 토의·결정”하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대신 당의 중앙조직을 규정하는 제3장에는 당대표회의의 관련 규정이 없다.

<표 3> 당대표대회와 당대표회의의 권한

	당대표대회	당대표회의
의사결정	① 당중앙위원회·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의 사업을 총화함. ② 당의 '중대 문제'들을 토의·결정함.	① 당의 '중대 문제'들을 토의·결정함.
입법	① 당의 규약을 수정함.	규정 없음.
선거	① 당중앙위원회·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를 선거함.	① 당중앙위원회·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 일부 성원에 대한 조정(調整) 및 추가 선출(增選)함. 단 조정 및 추가 선출하는 중앙위원회 위 원·후보위원 숫자는 당대표대회에 서 선출된 각자 총수(總數)의 5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中國共產黨黨章” 제20조와 제21조, 『人民日報』, 2017년 10월 29일을 참조 작성.

양위원회와 지방 각급 당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의 ‘중대 문제(重大問題)’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회의이다.<sup>23)</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대 문제’라는 표현이다. 조선로동당과 달리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와 당대표회의 모두에 ‘중대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양 대회에 대한 개념만으로는 의사결정 수위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sup>24)</sup> 따라서 당대표회의와 당대표대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권한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에 있어서 당대표

23) “中國共產黨黨章” 제12조, 『人民日報』, 2017년 10월 29일.

24) “中國共產黨黨章” 제20조, 『人民日報』, 2017년 10월 29일. 물론 조선로동당 당규약과 마찬가지로 당대회 및 당대회에서 선거한 당중앙위원회를 당의 최고 지도기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中國共產黨黨章” 제14조 참조.

사회와 당대표대회의 차이는 명확하다. 의사결정 권한은 차치하더라도, 입법 및 선거 권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당대표대회는 최고 입법권 즉 당규약 수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선거권 즉 당최고지도기관 선거 권한까지 거의 독점하고 있다. 당대표회의는 당규약 수정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고(당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당최고지도기관 일부 성원(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각자 총수의 5분의 1)에 대한 조정 및 추가 선출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이다.

또한 <표 1>과 <표 3>를 비교해 볼 때, 입법 및 선거 권한에 있어서, 조선로동당 당대표사회와 중국의 당대표회의의 차이 역시 명확하다. 우선, 입법 권한에 있어서 2010년 이후의 조선로동당 당대표사회와 달리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시종(始終) 당규약 수정·보충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북한의 당대표사회는 오히려 당규약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소련공산당의 당대표사회회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다음으로, 선거 권한에 있어서 당대표회의는 최고지도기관 구성원 일부에 대해 조정 및 추가 선출할 수 있는 대신, 조정 및 추가 선출 가능한 인원 숫자를 당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후보위원 각자 총수의 5분의 1로 제한함으로써, 권한에 있어서 당대표사회에 비해 제한적임

---

25) 정확히 말하면 1990년 7월 2-13일 소련공산당 제28차대회(소련공산당 마지막 대회)에서 통과된 ‘당규약 개정안’의 ‘III. 당의 조직구조’의 ‘소련공산당 최고 및 중앙기관’의 26조에 규정된 소련공산당 당대표사회회의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소련공산당 당대표사회회의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통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청취할 권리를 지니며, 부분적으로 (당대회 사이 기간에 3분의 1에 이르는) 그들 구성원을 재선하고, 소련공산당의 강력적 문건의 범위내에서 당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며, 당규약을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순 옮김, “소련공산당 제28차 대회 관련자료-소련공산당 규약,” 『중소연구』, 제14권 2호(1990), 253쪽을 참조. 1990년 당규약 개정안에 규정된 당규약 수정 권한은 처음으로 추가된 내용인지는 차후 확인이 필요하다.

<표 4> 당대표회의의 개최 시기와 주요의제

	주요의제
1955년 당대표회의 (1955.3.21~31)	① 국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3~1957) 초안 결의 ② 가오강(高崗)·라오슈스(饒漱石) 반당(反黨) 연맹(聯盟)에 관한 결의 ③ 중앙과 지방 당(黨) 감찰(監察)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의
1985년 당대표회의 (1985.9.18~23)	①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7차 5개년 계획(1986~1990)안 결의 ② 중앙위원회, 중앙고문위원회, 중앙기술검사위원회 위원 세대교체 <sup>1)</sup>

주: 1) 중앙고문위원회(中央顧問委員會)는 덩샤오핑이 중국공산당 중앙당의 세대교체를 위해 전문 설립한 기구로, 1982년 제12차 당대표대회에 신설되었다가 1992년 제14차 당대표대회에 철폐되었다. 또한 중앙기술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察委員會)는 조선로동당의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이다. 1985년 당대표회의에서는 연평·건강 등 이유로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64명), 중앙고문위원회 위원(36명), 중앙기술검사위원회 위원(31명) 퇴임, 대신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각 56명, 35명), 중앙고문위원회 위원(56명), 중앙기술검사위원회(31명) 추가 선출되었다. 조정 이후의 중앙위원회는 위원·후보위원 총 343명, 고문위원회는 위원 182명, 중앙고문위원회는 위원 129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李思學, “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研究,” 21~33쪽; 董華宣, 『中國共產黨重要會議紀事』(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1)를 참조 작성.

을 보여 주고 있다. 당규약 규정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권한에 있어서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1956년 2차 개정된 조선로동당 당규약에서 규정한 당대표자회와 거의 일치하다.<sup>26)</sup> 그러나 양 대회의 관련 권한의 차이는 1961년을 계기로 두드러진다. 이는 1961년 3차 개정된 조선로동당 당규약에서는 “당 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 위원회 위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sup>27)</sup> 따라서 1961년 이후 권한에 있어서 중국의 당대표회의가 북한의 당대표자회에 비해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6) 1956년 2차 개정된 조선로동당 당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당 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 위원회 위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이다.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a), 532쪽.

27) 진용선, “북한 조선 노동당 대회 및 대표자회 연구-당 규약, 조직, 인사,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91쪽; 박상철,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헌법과 당규약,” 394쪽.

한편, 중국의 당대표회의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시 대회에서 다른 주요의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와 <표 2>의 주요의제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당대표회의와 당대표자회의 공식명칭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대회·당대표대회는 “제×차”로 불린다는 점, 그리고 “제×차”로 불리는 당대표자회의와 달리, “19××년 당대표회의”로 불린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북한의 당대표자회에 비해 당내 지위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955년·1985년 당대표회의의 역할을 판단해 볼 때, 대회의 주요의제는 경제발전계획과 조직인사 관련 문제로, 이는 조선로동당의 제1차·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다른 주요의제와 유사하다. 즉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조선로동당의 제3차·제4차 당대표자회와 달리 최고 선거권 관련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표 1>~<표 4>를 기초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의 변화를 살펴볼 때, 2010년 이전 북한의 당대표자회가 토의·결정한 ‘긴급한 문제’에는 권력구조 문제와 함께 경제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침체에 빠짐에 따라 2010년 이후 당대표자회가 토의·결정한 ‘중요한 문제’는 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문제에 대한 토의·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당대표자회가 권한과 역할 면에서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를 완전히 대체한 기구는 아님을 의미한다.

요컨대, 최신 당규약의 규정과 당대표자회·당대표회의에서 다른 주요의제 등을 통해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인한 결과, 당대회·당대표대회 > 당대표자회 > 당대표회의 순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련공산당 대표대회제도를 공히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역할에서 있어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왜 중국의 당대표회의보다 더 중요한 기구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네 차례의 당대표자회와 두 차례의 당대표회의를 개최한 역사적 배경 또는 의미를 짚어볼 것이다.

### 3. 북중 양국에서의 당대표자회제도 발전의 차이 및 원인

상술하다시피, 2010년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당대회가 독점했던 당규약 수정(입법 권한)과 최고지도기관 선거(선거 권한)를 중복 부여받았다. 또한 1961년 조선로동당 당규약의 3차 개정을 계기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중국의 당대표회의에 비해 선거 권한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1961년 이전의 당대표자회와 당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입법 권한’과 ‘선거 권한’의 변화를 키워드로 당대표자회와 당대표회의의 관련 권한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러한 변화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 1) 역대 당대표자회의 개최 배경

<표 5>는 건국 이후 조선로동당·중국공산당 전국대회의 개최시기를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1958년 제1차 당대표자회와 1955년 당대표회의는 북중 양국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대표자회라는 점, 상황적 유사성,<sup>28)</sup> 그리고 모두 1950년대에 개최했다는 시대적 배경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표 2>와 <표 4>를 비교해 보면



< 표 5 > 건국 이후 조선로동당·중국공산당 전국대회 개최시기

(단위: 년)

개최 시기	조선로동당		중국공산당	
	당대회	당대표자회	당대표대회	당대표회의
1950년대	3차(1956)	제1차(1958)	8차(1956)	1955년 당대표회의
1960년대	4차(1961)	제2차(1966)	9차(1969)	
1970년대	5차(1970)		10차(1973) 11차(1977)	
1980년대	6차(1980)		12차(1982) 13차(1987)	1985년 당대표회의
1990년대			14차(1992) 15차(1997)	
2000년대			16차(2002) 17차(2007)	
2010년대	7차(2016)	제3차(2010) 제4차(2012)	18차(2012) 19차(2017)	

양 대회에서 다룬 주요의제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사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양 대회의 출발, 특히 양 대회는 처음부터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동일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최배경에 대한 진 일보의 검토가 필요하다.

1958년 1차 당대표자회의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반중과투쟁’에서 큰 성과를 이룩한 북한지도부가 이제 ‘반중과 투쟁’을 공식적으로 일단 마무리하고, 제1차 5개년계획을 중간 점검하며 1958년 말까지로 예정

28) 여기서 상향적 유사성은 전쟁을 끝내고 국내적 안정이 유지된 시간과 상황을 가리킨다. 신중국은 1949년 10월에 건국되었고, 5년 6개월 이후인 1955년 3월에 당대표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1948년 9월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6·25전쟁(1950-1953)을 거쳤기에, 휴전이 된 1953년 7월 이후로 보면 4년 10개월 이후(1958년 3월)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한 셈이다.

되어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1958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당대표자회를 개최했다.<sup>29)</sup> 북한지도부는 당대표자회를 통해 숙청(이른바 ‘투쟁행정’)을 마무리했고, 당 권력에 대한 김일성과의 전면적 장악으로 단일지도체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sup>30)</sup> 1958년 제 1차 당대표자회로 인해 ‘반종파 투쟁’은 김일성 지도부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조선로동당 내 정치과정의 역동성 탈각과 경직성을 낳은 계기로 작용했다.<sup>31)</sup>

한편, 1955년 당대표회의의 경우, 대회를 개최한 주된 목적이 가오강·라오슈스 반당 사건의 수습이라는 평가도 있으나,<sup>32)</sup>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것은 우선, 1955년 당대표회의는 당초 1953년 2월 5일에 개최할 것으로 공지했고, 예정된 회의 내용은 정치보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제도의 개최 및 헌법 제정 문제, 제1차 5개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 농업생산합작사(農業生產合作社) 문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보선이다.<sup>33)</sup> 또한 회의 개최 날짜는 네 차례의 변경을 거쳐 회의 개최 이틀 전인 1955년 3월 19일에야 확정되었는데, 최초로 변경한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차 5개년계획 초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34)</sup> 즉 1955년 당대표회의는 당대표대회를 개최할 여

29)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82쪽;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540쪽.

30) 이종석, 위의 책, 282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767쪽;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540쪽. 서동만(2005)에서는 ‘단일지도체계’ 대신 ‘일원적 지도 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1) 이종석, 위의 책, 284쪽.

32) 구자선, “장쩌민-후진타오 시기 중국공산당 개혁 연구: 당내민주와 자정운동을 중심으로,” 77쪽.

33) 劉平雪, “新中國成立後黨的一次全國代表會議,” 『湘潮』, 第10期(2005), p.31.

34) 개최 날짜를 1954년 8-9월(1차 변경), 1954년 12월 중순(2차 변경), 1955년 3월

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시급히 제1차 5개년계획 초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 당대회의 역할, 특히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던 것이다.<sup>35)</sup>

1958년 제1차 당대표자회와 1955년 당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개최된 당대회와 당대표대회에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대표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sup>36)</sup> 또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대표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표 6>에서 보다시피 “당 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 위원회 위원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어 결국 당대표자회의 선거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와 달리, 중국공산당 제8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을 보면 당대표회의의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다. 이는 각주 21)에서 밝혔듯이, 동 대회에서 당대표대회 상임제를 실시할 것으로 결의했고, 개정된

---

20일(3차 변경), 3월 21일(4차 변경) 등 네 차례 변경해 최종 확정되었다. 1953년 12월 말부터 가오강·라오슈스 사건이 주목을 받았고, 1차 5개년 계획 초안의 미완성과 함께 2차 변경의 원인이 되었다. 李思學, “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研究,” pp.22-23.

35) 중국의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 초안 작성은 1951년 봄부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작성은 1954년 4월부터 천윈(陳雲)이 주도하는 8인 경제팀이 전담했으며,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1955년 당대표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55년 7월에 개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36) 김일성은 제4차 당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1956년 8월 전원 회의와 1958년 3월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당 내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 이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어려운 투쟁에서 달성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당 발전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II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b), 70~71쪽.

<표 6> 당대표자회 관련 당규약 규정의 변화

	주요의제
2차 개정(1956) (제5장 당 중앙 기관의 제41조)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 중앙 위원회 위원을 그 성원으로부터 소환, 그를 보선 또는 새로 선거할 권리. 그러나 당 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 위원회 위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함.
3차 개정(1961) (제5장 당 중앙 기관의 제41조)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 위원을 그 성원으로부터 소환, 그를 보선 또는 새로 선거할 권한. 그러나 당 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 위원회 위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함(삭제된 부분임).

자료: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 531~532쪽; 진용선, “북한 조선 노동당 대회 및 대표자회 연구: 당 규약, 조직, 인사,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91쪽; 박상철,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헌법과 당규약,” 394쪽 등을 참조 작성.

당규약에 관련 내용을 삽입했기 때문이다.<sup>37)</sup> 또한 동 대회 이후 중국 국내정치는 극‘좌’로 변경되었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었다. 물론 그 와중에 중국공산당은 1969년, 1973년과 1977년에 각각 세 차례의 당대표대회를 개최했고 당규약을 개정했다. 그러나 세 차례 개정된 당규약은 6장 12조(제9차~제10차), 6장 19조(제11차)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당대표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고, 5년에 1회 개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특수한 상황에서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고, 제9차~제11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이외의 당규약에서는 볼 수 있는 당대표대회의 권한에 대한 규정조차 삭제되었다. 당대표대회의 권한마저 삭제되었고, 더불어 당대표회의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에 1960~1970년대 당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중국의 상황과 달리,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 북한지도부는 긴박하

37) “中國共產黨黨章” 제31조와 제33조, 『人民日報』, 1956년 9월 27일.

게 돌아가는 대외정세에 대처하고 국방력에 대한 집중투자로 담보상태에 빠진 7개년계획 목표의 빠른 달성을 촉구하기 위해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2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했다.<sup>38)</sup> 동 회의에서는 1962년 말 채택된 ‘국방·경제 병진정책’을 재확인한다. 병진노선 추구의 결과로,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을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1960년대 말 북한지도부는 계획의 실패와 경제의 침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sup>39)</sup> 또한 제2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전쟁위기 의식도 심화되면서 북한사회는 급격하게 군사화되고 동원체제화되어 갔다.<sup>40)</sup> 이어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와 당내 숙청을 계기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운동은 조선로동당과 북한사회를 정상궤도로부터 이탈시키고 나아가 북한사회체제를 비효율적인 체제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41)</sup> 이는 북한경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앙집권적 계획 및 지령과 억압적 노력동원에 의존한 경제성장 추구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함께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 침체기에 빠져든다.<sup>42)</sup>

한편, 조선로동당은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개인숭배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운동을 통해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닦았고,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했다.<sup>43)</sup> 유일지도체계의 형성은 조선로동당 내에서 후계자문제를

38)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97쪽.

39) 박순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박재규 엮음,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중보판)』(서울: 범문사, 2005), 124쪽.

40)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300쪽.

41) 이종석, 위의 책, 315쪽.

42) 박순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140쪽.

43)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324~325쪽.

자연스럽게 대두시켰고,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내외에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자의 위치가 공개화되면서 수령-후계자로 이어지는 유일지도체계의 최종 골격이 완성되었다.<sup>44)</sup> 당대회 및 당중앙위원회 등 공식회의체계를 활용하는 김일성과 달리, 후계자 김정일은 이른바 ‘측근정치’를 비교적 선호하는 다른 통치 리더십을 보였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는 물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았다.<sup>45)</sup> 물론 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경제가 본격적 침체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sup>46)</sup> 따라서 제1차·제2차 당대표자회의의 경우처럼 당대회에서 제정한 장기 경제계획 관련 내용을 점검할 필요성도 사라졌다.

한편, 중국지도부는 1978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11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20여 년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마무리했고, “당·국가 사업 중심의 경제건설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개혁개방을 결정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 따라 중국지도부는 제6차 5개년계획(1981~1985)과 제7차 5개년계획(1986~1990)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5개년계획의 점검을 위해 1985년 당대표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1982년

44) 이종석, 위의 책, 327쪽, 339쪽.

4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 이해』, 44쪽.

46) 조선로동당 당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총결기간(직전 당 대회와 현 당 대회 사시의 기간)의 경제성과와 새로운 경제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종석,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의 의미와 특징,” 『세종정책브리핑』, 2016-12(2016), 2쪽. 따라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목표의 미달성과 완충기(1985~1986) 설정,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목표의 미달성과 완충기(1994~1996) 설정으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당대표대회부터 당중앙위원회의 세대교체가 시작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의 퇴임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는 것도 회의 개최의 다른 하나의 주요목적이었다.<sup>47)</sup>

1985년 당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개최된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1956년 제6차 당대표대회에서 결정한 당대표대회 상임제로 인해 사라졌던 당대표회의는 1982년 당대표대회를 통해 ‘부활’했으며, 1987년 제13차 당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을 통해 최고지도기관 선거권 일부를 다시 부여받았다.

한편, 당대표자회가 개최된 지 44년 만에, 그리고 당대회가 개최된 지 30년 만에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와 관련해, 북한지도부는 2010년 6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회의 소집 목적이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임을 명확히 밝혔다.<sup>48)</sup> 북한지도부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한 배경과 관련해 “수령의 후견하에 후계체제를 구축하여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강화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 행사”라는 평가도 있으나,<sup>49)</sup>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일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안건’이다. 즉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서 제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조선로동당 총비

---

47) 구자선, “장쩌민-후진타오 시기 중국공산당 개혁 연구: 당내민주와 자정운동을 중심으로,” 77쪽.

48) 조선중앙통신, 2010년 6월 26일.

49) 이기동,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2010), 219쪽. 이기동(2010)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강화와 함께 김정은의 등장과 3대 세습에 주목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후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7> 당대표회의의 관련 당규약 규정의 변화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12차 당대표대회 (1982)	현급 및 현급 이상의 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회의를 소집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문제를 토의·결정함(제12조).	규정 없음.
제13차 당대표대회 (1987)	현급 및 현급 이상의 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회의를 소집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문제를 토의·결정함(제12조).	① 중대한 문제에 대한 토의·결정함, ② 중앙위원회·중앙고문위원회·중앙기율검사위원회 일부 성원에 대한 조정 및 추가 선출권을 부여함. 조정 및 추가 선출되는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숫자는 당대표대회에서 선출된 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제19조의 마지막 단락에 추가).

자료: “中國共產黨黨章” 제12조, 『人民日報』, 1982년 9월 9일; “中國共產黨章程部分條文修正案(1987年 11月 1日, 中國共產黨第十三次全國代表大會通過)” 『黨的建設』, Z1期(1987), pp.24~25을 참조 작성.

서’로 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sup>50)</sup> ‘김정일 체제의 강화’ 또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에서 ‘당 총비서’로의 격상도 유의미하지만, 앞서 연구자가 <표 2>의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1997년의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가 아닌 조선로동당의 전국적·공식적인 대회에서의 추대는 결국 1997년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계가 2010년 당대표자회를 통해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이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수령(김일성) - 후계자(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지도체계의 최종 골격이 완성되었던 것에 이어서 수령(김정일) - 후계자(김정은)로의 유일지도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출함으로써

50) 이정철, “조선 로동당 3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8권 1호(2011), 189쪽.



써 수령제하의 북한정치에서 그들 나름대로 권력승계를 제도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sup>51)</sup> 이와 관련해 <표 1>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수령에서 후계자로의 권력승계는 ‘긴급한 문제’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당대회와 같은 표현인 ‘기본문제’라는 용어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지도부 나름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표 1>과 <표 2>를 볼 때, 후계자 김정은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임명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당규약 규정을 근거로는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2010년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당대표자회의 입법 권한과 선거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정된 당규약을 규정을 근거로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 김정은은 새로운 수령으로 추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양 대회 발전의 차이 및 원인

그렇다면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왜 중국의 당대표회의보다 더 중요한 기구가 되었는가? 당대표자회와 당대표회의 개최 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양 대회 발전의 차이를 결정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째, 당대회 및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최고지도기관 권한을 대행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느냐 아니냐이다. 그것은 당대표자회의 기원인 소련공산당 당대표자회의 탄생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표자회(또는 당대표회

---

51)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717~721쪽.

<표 8> 당대회와 당대표대회표회의의 관련 당규약 규정의 변화

(단위: 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최근
당대회	개최 시간	3차 (1956)	4차 (1961)	5차 (1970)		6차 (1980)		7차 (2016)
	개최 규정	4년 1회	4년 1회	4년 1회		5년 1회		규정 없음
당 대표대 회	개최 시간	8차 (1956)	9차 (1969)	10차 (1973)	11차 (1977)	12차 (1982)	13차 (1987)	19차 (2017)
	개최 규정	1년 1회	5년 1회	5년 1회	5년 1회	5년 1회	5년 1회	5년 1회

의는 당대회(또는 당대표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하는 임시 당대회(또는 당대표대회) 성격의 대회이기 때문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1960~1970년대 중반의 혼란기와 달리, 1977년 제11차 당대표대회가 개최된 이후 중국공산당은 당규약 규정(5년 1회)에 따라, 당대표대회를 5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 당대표대회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7차례(1.4차/년)를 개최해왔다. 특히 1992년 제14차 당대표대회 이후부터, 1차 전원회의-최고지도부 확정, 2차 전원회의-국가기관과 정치협상회의 주요인사 확정, 3차 전원회의-국민경제 관련 주요사항 결정, 4차 전원회의-당내 건설 관련 결정, 5차 전원회의-경제발전 5개년계획 논의, 6차 전원회의-문화 또는 사회사업(社會事業) 관련 논의 및 차기 당대표대회 일정 결정, 7차 전원회의-차기 당대표대회 준비사항 논의 및 사전 점검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sup>52)</sup> 요컨대, 당대표대회 5년/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4차/년, 당중앙 정치국회의의 1차/월, 당중앙 정치

52) 이는 제14차(1992년)~제19차 당대표대회의 전원회의의 주요의제를 비교·분석해 도출한 특징이다.

국 상무위원회 회의 1차/주 등 당대표대회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의 당대표대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정기적으로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회의는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같이 권한을 중복 부여받을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둘째, 양 대회의 의사결정, 입법 및 선거 권한에서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당의 지도이념과 지도체제의 구축과 밀접히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우선, 최근 북한 정치권력의 구조와 운용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당의 정상화 및 당의 정상적 기능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신군정치’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현재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속적으로 지도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달리, 조선로동당은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했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국가권력의 일당 독점을 넘어 사당화(私黨化)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첫 문장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정당이다”라면,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라는 점이다. 또한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과 2016년 5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는 당의 최종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정치이념의 승계에 있어서, 주체-신군으로 이어지는 사상은 계속 백두혈통으로 이어 간다는 논리이다.<sup>53)</sup>

다음으로, 당의 지도체제 구축 특히 권력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로동당의 사당화 경향은 최고권력자 지위에 대한 부자 세습과 3대 세습, 그리고 최고권력에 대한 1인 독점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중국공산당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퇴장과 원로정치 종식으로 인해 장쩌민(江澤民) 시기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했는데,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과 파벌 간의 권력 분산을 결합시킨 통치체제라는 것이다.<sup>54)</sup>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인 당총서기와 최고지도기관은 세습이 아니라 당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자는 선출이 아닌 ‘추대’, 최고기관은 ‘선출’되는 차이를 보여 준다. 그럼에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기관이 ‘선출’되든 ‘추대’되든 나름대로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10년 당대표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의사결정 권한의 격상과 더불어, 입법 및 선거 권한에서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한이 강화된 당규약 규정을 근거로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2012년 3대 권력세습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기관이 ‘선출’되든 ‘추대’되든 나름대로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주 7)에서 설명했듯이 김정일 사후 2019년 현재까지 북한에서 개최한 중앙당 급 회의가 총 24회로, 2011~2019년간 약 3회/년 개최된 점은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2010년 당대표회가 당의 역할을 강화하여 당·국가체제로의 정상화에 시동을 건 계기

53) 김창희,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2012), 86쪽.

54) 구자선, “장쩌민-후진타오 시기 중국공산당 개혁 연구: 당내민주와 자정운동을 중심으로,” i-iii쪽.

점으로 기록된다면,<sup>55)</sup> 2016년 제7차 당대회는 북한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특히 이는 1990년대 선군노선에 기반한 위기관리 상황을 끝내고 정상적 당·국가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또한 당대표자회와 당대표회의의 존재감의 차이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으로 제시한 당대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지의 여부, 더불어 제7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차 개최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단기간 내 2010년이나 2012년처럼 주목받을 수 있는 당대표자회를 개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4.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에 주목하여, 양 대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또한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소련공산당의 당대표회의제도를 수용 및 발전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2010년 당규약 수정 권한을 부여받았고, 2010년과 2012년 각각 김정일과 김정은을 최고지도자로 추대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킨 반면, 중국의 당대표회의는 존재감을 거의 상실했다. 이러한 양 대회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과 관련해, 이 논문은 당대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정기적 개최 여부, 당의 지도이념과 지도체제의

---

55) 이정철, “조선 로동당 3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200쪽.

구축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당대표자회(또는 당대표회의)는 당대회(또는 당대표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하는 임시 당대회(또는 당대표대회) 성격의 대회이다. 따라서 중국의 당대표대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정기적으로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같이 입법 및 선거 권한을 당대표회의에 중복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체제를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라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권력 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체제의 특성을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북한체제의 특성을 수령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북중 양국의 최고지도자의 공식화는 ‘선출’과 ‘추대’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은, ‘선출’되든 ‘추대’되든 나름대로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며, 김정일 사후 2019년 현재까지 북한에서 개최한 중앙당 급 회의가 약 3회/년이라는 점은 김정은시대 북한체제의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6년 제7차 당대회는 북한체제가 1990년대 선군노선에 기반한 위기관리 상황을 끝내고 정상적 당·국가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또한 제7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차 개최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단기간 내 2010년이나 2012년처럼 주목받을 수 있는 당대표자회를 개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물론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의처럼 북한이 경제·안보의 ‘이중 위기’에 직면해 개최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960년대 중반에 비해 현재 북한이 직면한 대외안보적 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sup>56)</sup> 반대로 2018년 3월~2019년 6월 불과 1년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북중 양국의 정상회담이 다섯 차례 성사되었고 북중관계

56) 북한이 1996년대 중반 직면한 대외안보 위기는 대미 위기와 더불어 중소분쟁, 북중관계 악화에 따른 위기이고, 현재 직면한 위기는 주요하게 대미 위기이다.

가 유사 이래 보기 드문 ‘밀월관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더불어 이러한 북중 ‘밀월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중미 갈등’이라는 점이다.

한편, 북한의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로의 복귀 내지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개선은 북한의 대외적 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토의·결정한 ‘기본문제’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 나아가 개혁개방이후 중국체제의 변화처럼 북한체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주목해 할 것은, 중국이 1978년 11기 3중 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정책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외적 환경의 변화는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정식 수교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북미 화해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남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화해 중재자’ 역할이 강조된다.

■ 접수: 7월 1일 / 수정: 8월 8일 / 채택: 8월 12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조선로동당 규약』(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 2) 신문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결정.” 『로동신문』, 1997년 9월 22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 『로동신문』, 1997년 9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로동신문』, 1997년 10월 9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 I 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a).

\_\_\_\_\_,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 II 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b).

\_\_\_\_\_,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 IV 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c).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경기: 한울, 201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 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 2) 논문

구자선, “장쩌민-후진타오 시기 중국공산당 개혁 연구: 당내민주와 자정운동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경순 옮김, “소련공산당 제28차 대회 관련자료: 소련공산당 규약,” 『중소연구』, 제14권 2호(1990), 246~269쪽.
- 김용현, “선군정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2005), 111~138쪽.
- 김창희,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84호(2017), 139~160쪽.
- \_\_\_\_\_,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한국동북아논총』, 제64호(2012), 79~104쪽.
- 박상철,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헌법과 당규약,” 『안보학술논집』, 제27집(2016), 349~430쪽.
- 박순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박재규 엮음,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증보판)』(서울: 법문사, 2005), 117~142쪽.
- 유은하, “개혁기 중국 공산당 변화 연구: 당의 조직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3집 2호(2012), 1~36쪽.
- 이기동,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국방연구』, 제54권 1호(2011), 77~95쪽.
- \_\_\_\_\_,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2010), 215~242쪽.
- 이정철, “조선로동당 3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8권 1호(2011), 187~205쪽.
- 이종석,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의미와 특징,” 『세종정책브리핑』, 2016-12(2016), 1~3쪽.
-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12), 117~145쪽.
- 진용선, “북한 조선노동당 대회 및 대표자회 연구: 당 규약, 조직, 인사,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 기타

조선중앙통신, 2010년 6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력력,” <http://www.kcna.kp/kcna.user.exploit.exploit.kcmsf.jsessionid=74DFA640D8F7D096DE2B7649BE418020>(검색일: 2019년 2월 10일).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董華宣, 『中國共產黨重要會議紀事』(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11).

波諾馬廖夫, 『蘇聯共產黨歷史』, 上冊(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4).

#### 2) 논문

蔡霞, “以制度建設承載與保障黨的先進性-中國共產黨90年制度建設的回顧與思考,” 中共中央組織部全國黨的建設研究會編, 『紀念中國共產黨成立90周年黨建研討會論文選編』, 上冊(北京: 黨建讀物出版社, 2011), pp.284~291.

李玉榮, “新中國60年黨的制度建設的回顧與思考,” 『政治學研究』, 第4期(2009), pp.3~13.

李思學, “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研究”(中國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劉平雪, “新中國成立後黨的一次全國代表會議,” 『湘潮』, 第10期(2005), pp.31~33.

“中國共產黨章程部分條文修正案(1987年11月1日, 中國共產黨第十三次全國代表大會通過),” 『黨的建設』, Z1期(1987), pp.24~25.

#### 3) 신문

“中國共產黨黨章,” 『人民日報』(2017년 10월 29일).

“中國共產黨黨章,” 『人民日報』(1982년 9월 9일).

“中國共產黨黨章,” 『人民日報』(1956년 9월 27일).

# A Study of the Conferenc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Li, XiangYu(Ocean University of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ferences on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Conferenc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hat's more, we will also look for the reasons that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uthority and role of both conferences.

The specific ques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hy is the Conference of Party held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Congress of Party in both countries? Second, what authority and role did the two conferences have in North Korea and China? Third, what ar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authority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nferenc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ongress of Party in both countries has accepted and developed the system of the Conference of Part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vertheless, the Conferenc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has been given the authority to amend its regulations in 2010. Also, in 2010 and 2012, the party congress highlighted its value by embraci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as top leaders respectively. While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lmost lost its value. With regard to the determinants of differences in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se two conferences, this paper presented two things: whether the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are held regularly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y's guiding ideology and leadership system.

Keywords: the system of Party organization, the Conferenc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omparison, implication